보고번호	회의차수	회의일자	보 고 자
57	11	1986. 4. 17	총재 박성상

보 고 : 「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」 개정

보고사항 : 기업의 장기자금 수요를 직접금융으로 유도하고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「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」을 개정하여 금융기관의 대기업에 대한 사채보증총액을 다음과 같이 확대하였기에 이를 보고함

종 전	개 정
당해기업 자기자본의 100%이내	당해기업 자기자본의 150%이내

36/40

보고관계
법규조항

「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」 제 2조 (금융기관의 여신운용 및 투자지침)

금융기관은 한국은행법 제 73조 제 1항 제 2호에서 정하는 불건전한 여신 또는 투자를 초래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의 준수에 노력하여야 한다.

1 - 7. (생 략)

8. 한국은행 총재가 정하는 대출, 투자, 지급보증 및 인수업무의 취급기준과 용도별 한도의 준수

「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」 제 4조 (금통운위에 대한 보고)

한국은행 총재가 제 2조 제 8호의 규정에 의거 금융기관의 여신취급기준을 정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참고사항 : 「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」 개정 내용

「금 융 기 관 여 신 운 용 세 칙」개 정 내 용

현 행	개 정
제 1조 - 제 6조 (생 략)	제 1조 - 제 6조 (현 행 과 같 음)
제 7조 ① - ③ (생 략)	제 7조 ① - ③ (현 행 과 같 음)
④ 금융기관의 대기업에 대한 사채보증한도는 보증사채의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기업 자기자본의 100%(「시설대여 산업 육성법」에 의하여 설립된 시설대여 회사의 경우 500%) 해당액으로 하며 각 금융기관은 동 한도에서 타 금융기관 (비 은행 금융기관포함)의 보증에 의한 사채발행실적을 차감한 금액 범위내에서 발행되는 사채에 한하여 보증할 수 있다. 다만, 기발행된 보증사채의 상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사채에 대한 보증취급에 따른 한도 초과는 예외로 한다.	④ 금융기관의 대기업에 대한 사채보증 총액은 보증사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기업 자기자본의 150% 산업 육성법」에 의하여 설립된 시설대여회사의 해당액을 초과하지 못한다. 다만, 기발행된 보증사채의 상환을 위하여 발행하 대한 보증취급의 경우 기발행 사채에 대한 보증추 보증총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제 8조 - 제 10조 (생 략)	제 8조 - 제 10조 (현 행 과 같 음)
	부 칙
	이 세칙은 1986. 4. 3 부터 시행한다.